#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71 발의연월일: 2025. 4. 21.

발 의 자:이만희·서천호·정희용

김태호 • 최은석 • 박성민

서명옥 · 조은희 · 엄태영

이달희 • 이성권 • 김선교

송언석 • 박형수 • 임종득

김형동 • 이상휘 • 구자근

강명구 · 김정재 · 조지연

김석기 · 임이자 의원

(23인)

####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위로의 마음을 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인의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금액을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전액 세액공제 금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부금 한도를 없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2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를 "100분의 15"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 한다.

- ② 거주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대통령 이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산입한다.
- 1.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20만원 초과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 110분의 100 + (고 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30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u>1</u> 00분의 <u>1</u>
<u>5</u>

<u>포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u> 우에는 100분의 30)

<신 설>

② <u>제1항</u>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 ② 거주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1.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110분의 100
- 2. 20만원 초과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20만원) × 100분의 30
- <u>②</u>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u>③</u> 제1항 및 제2항-----